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. 23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월 10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1월 23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징수과장 임태순

### 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조문 중 제6조 제1항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,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 
(안 제6조 제1항 제11호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붙여 쓰기 되어있는 조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, 띄어쓰기 되어 있는 조문에는 붙여 쓰기 적용  
(안 제6조 제1항 제4호)

### 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**

- 본 개정조례안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할 경우,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는 연간 약526천원으로 미미하여 우리 구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해당 수입 감소는 다음 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정보전 할 예정임. 따라서,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고,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모범납세자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, 또한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